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10.12.24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0.12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합리적인 등록금 및 대학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,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절차 등 등록금 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 및 합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.

1. 합리적인 등록금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·학생·관련전문가를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며, 학생대표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출하고, 교직원·관련전문가는 총장이 위촉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09.13., 2020.12.01., 2021.12.01.>

1. 교원 2명
2. 직원 1명
3. 학생 3명 <개정 2018.09.13., 2020.12.01.>
4. 관련전문가 1명

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,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.
<개정 2020.12.01.>

제5조(위원장) 위원장은 미래전략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

2022.10.01.,2023.10.16.>

제6조(임기)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위원회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보선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시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조요청) 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행정부서와 협의에 의해 등록금채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규정의 개정) 위원회의 규정의 개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